

# 제품안전규정 제 · 개정 정보 알아두고 대비하자

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법률 제11969호, 2013. 7. 30. 공포, 2014. 7. 31. 시행)  
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외에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, 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며, 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이 개정됨

##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도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

(안 제3조, 별표 2부터 별표 3의2까지 및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
### ✓ 개정이유

⇒ 현행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범위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일정한 한계 존재

### ✓ 주요내용

⇒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외에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 확인시험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도록 하되, 안전관리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함

##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마련

(안 제23조의2 및 별표 11 신설)

⇒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 및 지정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

## 행정처분 감경 사유의 명확화

(안 별표 8 제1호다목)

### ✓ 개정이유

⇒ 인증표시 사용금지,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,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등 처분의 감경 사유가 “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”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

### ✓ 주요내용

⇒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또는 해당 전기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·교환·환급·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

##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편의 제고

(안 제25조의4제2호 신설)

### ✓ 개정이유

⇒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,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

### ✓ 주요내용

⇒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거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해소